

## 『금융공학연구』 투고규정

제정	2002년	6월	21일
개정	2004년	12월	4일
개정	2005년	3월	5일
개정	2005년	6월	4일
개정	2007년	1월	3일
개정	2007년	12월	8일
개정	2009년	12월	5일
개정	2011년	2월	25일
개정	2011년	8월	23일
개정	2012년	2월	21일
개정	2013년	3월	27일

### 제1장 투고요령

제1조 (게재 논문의 성격) 「금융공학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한국금융공학회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고 학문적 기여도가 높은 연구논문과 연구노트로 한다.

제2조 (기고 자격) 본 학회지의 기고자는 본 학회의 회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자로 한다. 동등자격에 대해서는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 (게재여부의 최종결정 및 완성논문 제출) 기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게재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제출된 원고는 반환되지 않는다.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완성 원고 1부와 함께 동일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8. 23>

제3조의2 (게재논문의 소유권)

금융공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금융공학회가 소유한다.<신설 2011. 2. 25>

제4조 (투고제한) 단행본이나 다른 학술지(대학교지 포함)에 이미 게재된 내용은 본 학회지에 게재하지 않는다. 단, 학술대회나 세미나에서 초본(working paper)의 형태로 발표된 논문은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제4조의2 (논문투고자의 의무)<신설 2011. 2. 25>

- ① 국내외 논문을 표절하여 투고해서는 안 된다. 참고 수준을 넘어 기존 논문의 내용을 혼합해서 작성하면 표절로 본다. 이에 대한 진위여부는 연구윤리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② 투고논문의 내용과 표절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 ③ 위의 ①,②항을 위반한 투고자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융공학연구」에의 논문투고 금지 등 벌칙을 부과한다. 이는 사후에 적발되어도 소급 적용된다.

제5조 (심사요청) 본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는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원고를 제출하고, 심사료 1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단, 게재확정시에는 논문게재료 20만원(연구비사사 표시논문의 경우에는 30만원)을 추가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4> <개정 2007. 1. 3> <개정 2007. 12. 8> <개정 2011. 8. 23> <개정 2012. 2. 21> <개정 2013. 3. 27>

- ① 홈페이지 주소: <http://kafe.or.kr>
- ② 심사료 및 게재료 입금계좌: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948-17-005882(예금주: 한국금융공학회)

제6조 (심사용 원고제출시 표지기재사항) 원고의 표지에는 제목과 제출일자, 저자들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e-mail주소 등을 명확히 표기하고, 제1저자와 교신저자, 공동저자의 구분을 표기한다. 제목과 성명은 한국어와 영어로 모두 표기한다.<개정 2004. 12. 4> <개정 2005. 3. 5> <개정 2011. 2. 25> <개정 2011. 8. 23>

제6조의2 (심사용 원고제출시 본문기재사항) 요약문 하단에는 주제어를 표기하고,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영어로 논문명, 저자명, 초록, 주제어를 표기한다. 단, 영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한국어로 논문명, 저자명, 초록, 주제어를 표기한다.<신설 2005. 3. 5> <개정 2011. 8. 23>

## 제2장 원고작성요령

제7조 (논문원고 규격) 논문원고는 아래에서 지정한 규격에 맞추어 A4 용지 20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1,000자 내외의 요약문을 첨부한다.<개정 2011. 8. 23>

제8조 (논문작성 언어) 논문원고는 한국어 혹은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자나 외국어의 사용은 학술용어나 강조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 8. 23>

제9조 (장, 절, 항의 표기) 장, 절, 항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09. 12. 5>

I.

1.

1.1

1.1.1

제10조 (표와 그림의 표기) 표와 그림은 백지에 선명하게 그리고, 순서별 해당번호(예 : <표 1>, [그림 1] )를 표기 한다. 표의 경우 상단에 제목 또는 설명을 붙이고, 그림의 경우에는 하단에 제목 또는 설명을 붙인다. 표나 그림의 하단에 주를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11. 8. 23>

제11조 (각주의 표기) 각주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며,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각 면 하단에 표시한다.

제12조 (참고문헌의 표기)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된 문헌에 한정하며, 본문 중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자명 다음의 괄호 속에 연도를 표기한다.

예 : 김길동(1990)에 의하면 …… 또는 (김길동, 1990).

제13조 (참고문헌의 배열 및 표기) 참고문헌 배열은 다음의 예와 같이 국내문헌과 해외문헌으로 구분하되, 저자명에 따라 국내문헌은 가나다 순으로, 해외문헌은 ABC 순으로 작성한다. 참고문헌이 정기간행물인 경우는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물명(국내 문헌 및 동양서의 경우는 중고딕체로, 서양서인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시), 권(Vol), 호(No), 면(page)의 순으로, 단행본인 경우는 저자

명, 출판연도, 도서명(국내 문헌 및 동양서의 경우는 중고딕체로, 서양서인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표시), 권(2권 이상), 출판회수(2판 이상), 출판사명의 순으로 기재한다.<개정 2009. 12. 5> <개정 2011. 8. 23>

— <참고문헌의 배열 및 표기 방법 예시> —

<p>김선물 (1990), 우리나라의 선물시장, 금융출판사.</p> <p>김읍선 (1998), “읍선시장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공학회지, 제3권 제1호, 159-176.</p> <p>Hull, J. (1989), <i>Options, Futures, and Other Derivative Securities</i>, Prentice-Hall.</p> <p>Jarrow, R. A. and S. M. Turnbull (1995), "Pricing Options on Derivative Securities Subject to Credit Risk," <i>Journal of Finance</i>, 50(1), 53-85.</p>
---

제14조 (원고작성 소프트웨어 및 편집기준)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HWP)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9. 12. 5>

- 1) 본문의 규격은 가로 13cm, 세로 19cm로 한다. 이는 HWP프로그램의 편집 용지설정에서 「A4, 위 50mm, 좌·우 40mm, 아래 28mm, 머리말 15mm, 꼬리말 13」에 해당된다
- 2) 글자모양은 신명조체로 하며 장, 절, 항, 목에 이어지는 본문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목(견명조체, 크기 18, 가운데정렬)

I. (견명조체, 글자크기 15)

1. (글자크기 13)

1.1 (글자크기 11)

1.1.1. (글자크기 11)

본문내용: 글자크기 10

(단, 표와 그림의 제목 및 내용은 크기 9, 가운데정렬)

주석: 글자크기 8

요약문: 글자크기 8.5

3) 문단모양

들여쓰기 : 2ch (영문자 2 character)

줄 간 격 : 175%

**부 칙(2002. 6. 2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2. 4)**

본 규정은 200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5)**

본 규정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4)**

본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3)**

본 규정은 200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8)**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5)**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25)**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23)**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1)**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3. 27)**

본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금융공학연구』 심사규정

제정 2002년 6월 21일

개정 2008년 5월 16일

개정 2009년 12월 5일

개정 2011년 2월 25일

개정 2011년 8월 23일

개정 2015년 3월 20일

### 제1장 심사절차

#### 제1조 (논문접수)

- ① 논문 원고는 「금융공학연구」 투고규정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접수 심사한다.
- ② 원고는 학회 사무국에서 연중 기간 제한 없이 편집위원회 간사가 접수한다.
- ③ 편집위원회 간사는 논문심사진행표에 논문접수 사실을 기록하고, 즉시 접수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 3. 20>

#### 제2조 (심사자의 선정)

- ① 편집위원회 간사는 논문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접수 논문 사본 1부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편집위원에게 논문의 심사에 적합한 심사위원들을 추천받거나 직접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한다. <개정 2008. 5. 16> <개정 2011. 8. 23> <개정 2015. 3. 20>
- ③ 심사자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심사자 선정은 논문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제3조 (논문의 발송 및 심사)

심사자가 확정되면 편집위원회 간사는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대상 논문을 즉시 심사자에게 송부한다. 이때 후술하는 심사결과의 판정방법을 심사위원에게 고지한다. 심사자는 발송일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최대 3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보고서의 제출 및 심사결과의 처리)

- ① 심사자는 심사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후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1차 심사에 의해 「C(합계 18-23점):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거나 제3의 심사자가 재판정한다. <개정 2011. 8. 23>

제5조 (학술지 게재)

- ① 게재 적합으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 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금융공학연구」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금융공학연구」의 논문게재순서는 게재확정논문 중 편집위원회가 우수하다고 판단한 논문 또는 현안문제를 다룬 1내지 3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게재하고 나머지 논문은 게재확정 날짜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심사 기준과 심사결과의 판정**

제6조 (심사 기준)

- ① 개별 심사자의 논문심사 평가 항목과 항목별 배점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09. 12. 5> <개정 2011. 8. 23>

주요 평가항목	매우 미흡 (1점)	미흡 (2점)	보통 (3점)	우수 (4점)	매우 우수 (5점)	합계
(1) 연구주제의 적합성 (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2) 연구내용의 독창성 (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3) 연구방법의 타당성 (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4) 논문구성의 체계성 (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현실적 시사점 포함)						
(6) 논문의 의사 전달 효과 (논문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						
평점 합계						



- ② 개별 심사자의 심사결과 (평점 합계)에 의한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설 2009. 12. 5> <개정 2011. 8. 23>
- (1) A(합계 27-30점) : 게재가능(일부보완 또는 원안게재, 수정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 (2) B(합계 24-26점) : 수정 후 게재가능(수정보완 후 게재가능, 편집위원회에서 수정확인)
  - (3) C(합계 18-23점) : 수정 후 재심사(심사자에게 재심사의뢰)
  - (4) D(합계 18점 미만) : 게재불가(게재불가 사유를 심사의견서에 자세히 밝힘)

제7조 (게재조건에 대한 처리방법)

- ① 심사자 3인의 게재조건에 대한 심사의견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9. 12. 5> <개정 2011. 8. 23>

평점 총합	종합판정	처리	비고
81-90점	A	게재가능	수정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72-80점	B	수정 후 게재 가능	수정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여부 확인
54-71점	C	수정 후 재심사	수정된 논문은 심사자 또는 제 3의 심사자에게 다시 회부
54점 미만	D	게재불가	게재불가 통보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게재불가 확정

- ② 제7조 제①항의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본 항의 처리 기준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 1. 3명의 심사자 중 1명이라도 「D(합계 18점 미만): 게재불가」 의견을 제시한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 2. 평점 총합에 의한 종합판정 결과 A 혹은 B로 판정받았더라도 3명의 심사자 중 「C(합계 18-23점): 수정 후 재심사」로 의견을 제시한 심사자가 있는 경우 수정논문을 당해 심사자에게 재심사 의뢰한다.
  - 3. 심사논문은 3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B이상의 최종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게재할 수 있다.
- 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심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호 배치되는 심사결과를 보고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5> <개정 2011. 8. 23>

- ④ 논문의 수정 허용기간은 수정 요청 후 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내용에 근거하여 편집위원장이 수정 허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수정 허용기간내에 수정논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 종결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논문에 대하여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신설 2011. 2. 25>

제7조의2 (게재불가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처리방법) <개정 2015. 3. 20>

편집위원회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 운용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의 구분표기)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등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은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전자에 언급된 저자를 제1저자로 간주하고, 그 나머지는 공동저자로 간주한다. <개정 2009. 12. 5>

제9조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와의 의견 대립) <개정 2015. 3. 20>

편집위원회의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JAMS) 운용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편집위원 제출 논문의 처리)

편집위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편집간사는 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하며, 이 경우 심사자는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가 선정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당해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간사가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 부 칙(2002. 6. 2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8. 5. 16)

본 규정은 200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9. 12. 5)

본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2. 25)**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23)**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20)**

본 규정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금융공학연구』 발행규정

제정 2002년 6월 21일

개정 2007년 12월 8일

개정 2008년 5월 16일

### 제1조 (명칭)

본 학회지의 한글명칭은 "금융공학연구"로하며, 영문명칭은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Engineering"로 한다.

### 제2조 (발행인/발행처)

한국금융공학회의 회장(이하 "학회장"이라 한다)을 발행인으로 하며, 발행처는 한국금융공학회로 한다.

### 제3조 <삭제 2008. 5. 16>

### 제4조 <삭제 2008. 5. 16>

### 제5조 (발행위원회)

1. 발행위원회는 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회에서 선임한 발행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2. 발행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실무를 논의한다.

### 제6조 (발행회수)

발행회수는 년 4회로 하고,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과 12월 31일로 구분하여 실행한다. <개정 2007. 12. 8><개정 2008. 5. 16>

제7조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수집은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채택 여부는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3. 규정되지 않은 인쇄전 제반업무는 한국금융공학회에서 논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발행비용 및 수입)

1. 논문게재료를 제외한 발행비용은 한국금융공학회에서 부담한다.
2. 논문게재료는 조판, 편집, 제판, 별책인쇄 등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한다.
3. 논문게재료에 대한 관리는 학회에 일임한다.
4. 학회지 발행에 대한 외부지원금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에 일임한다.
5. 광고게재 비용 및 수입과 관련된 사항은 학회에 일임한다.

**부 칙(2002. 6. 2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8)**

본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16)**

본 규정은 200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02년 6월 21일

개정 2008년 5월 16일

제1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논문 심사의 사무는 편집위원회 간사가 담당한다. <개정 2008. 5. 16>

제2조 (편집위원의 선정기준 및 절차) 편집위원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1. 편집위원의 자격조건은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및 2년제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한다.
2. 편집위원의 지역적 대표성을 위해 대단위 행정구역 3개 이상에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최근 2년 이내의 연구업적 및 연구활동에서 저명도를 인정받아야 한다.
4.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편집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신속하게 논문심사 절차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심사위원 위촉, 심사, 게재 여부 판정 등 「금융공학연구」의 편집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하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 칙(2002. 6. 21)**

본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16)**

본 규정은 200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금융공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년 12월 8일

개정 2008년 5월 16일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한국금융공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가 수행하는 제반 학술활동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금융공학연구에 게재 신청하거나 게재된 논문과 학회 주최의 학술대회에 발표되는 논문이 연구윤리를 해칠만한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
2.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
3.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실질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연구자의 논문과 내용이 거의 동일한 논문을 게재 신청하는 행위 <신설 2008. 5. 16>
7.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활동과 적절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3.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과 학회 총무이사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을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 저자와 제목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보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제보자가 사전에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③ 금융공학연구에 게재 신청한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최종판정이 있을 때까지 심사규정에 의한 모든 심사를 보류한다. <신설 2008. 5. 16>

제6조 (조사방법)

- ① 제보된 연구부정행위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제보된 부정행위가 제3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시효기산일인 5년 이내에 행해진 것인지를 고려하여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 ②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 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하여 30일 이내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 ③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활동은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제7조 (최종판정의 통보와 이의제기)

- ① 위원회는 제보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판정을 내려야 하며, 판정을 내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7조 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제재조치) 위원회는 제보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발간된 논문집에 이미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의 제 9조 1항에 따라 금융공학연구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을 받은 기고자에 대하여 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의 제 9조 1항에 따라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 금융공학연구에 논문 기고를 금지하며, 이러한 사실을 한국금융공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③ 제보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①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대외비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위원회의 최종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사내용과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제보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2007. 12. 8)**

이 규정은 2007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16)**

이 규정은 200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한국금융공학회 입회 원서

성 명	(한글)	(한문)	(영문)
소 속	직 위	(전화)	
	기관명		
	주 소		
자택주소			전 화
			휴대폰
E - Mail			FAX
전 공			

본인은 귀 학회의 정회원으로 입회하고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 ※ 알 린

학회 회원들의 입회를 받고 있습니다. 본 학회의 주요재원은 회비입니다.  
다음 내용을 참조하시어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 회 비 : 20,000원
- 평생회비 : 2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948-17-005882 (예금주) 부산대학교(한국금융공학회)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금융공학회 회장 귀하

